
제3차 친환경농업TF 회의

2021. 9. 30(목).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친환경농업TF」 제3차 회의 개최 계획

1. 개요

□ 목적: 친환경농업 부문별 핵심과제 및 향후 추진 일정 논의

□ 일시/장소: 2021년 9월 30일(목) 10:00~12:00, 영상회의*

* Zoom 접속 URL: <https://us06web.zoom.us/j/9317571168>

□ 참석대상: 20명 내외

- TF 위원 17명, 관계부처(농식품부, 농진청, 농관원), 농특위 사무국

□ 주요내용

- (의제) 그간 소분과회의, 운영위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의제 확정
- (향후일정) 현장의견 수렴 및 토론회(11월) 준비, 농특위 본회의(12월) 안건 상정을 위한 일정 등

2. 세부 일정

일 정	주 요 내 용	비 고
10:00~10:10 (10')	○ 개회 ○ 참석자 인사	TF단장
10:10~10:30 (20')	○ 소분과별 논의사항 보고	소분과장
10:30~11:20 (50')	○ 분과별 핵심 과제 논의	TF단장
11:20~11:50 (30')	○ 현장의견 수렴 및 토론회 개최방안 논의 ○ 농특위 본회의 상정 방안 논의	TF단장
11:50~12:00 (10')	○ 향후 일정 및 마무리	TF단장

* 회의 시간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목 차



I. 추진배경 및 기본방향	4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4
2. 기본방향	6
II. 친환경농업의 현황 및 발전 방향	7
1. 현황	7
2. 비전과 원칙	8
III. 중장기적 발전 방안	9
1. 생산부문	9
2. 소비부문	12
3. 법령·제도부문	15
부록 1. 전차회의록	18
부록 2. 일본의 유기농업 및 환경친화적 활동 지원 법률 사례	21
부록 3. 식품체계에서 기후변화 대응 방안	26
부록 4. TF 향후 일정	27
부록 5. 친환경농업TF 위원 명단	28

I. 추진배경 및 기본방향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농업 및 식품 분야 역할의 중요성

- (온실가스 배출 증가) 농업분야 배출량 증가 추세 20.7백만톤 CO₂eq.(2016) → 21.2(2018). 약 2.4% 증가
- (탄소흡수) 농업은 온실가스 배출(CH₄, N₂O) 뿐만 아니라 흡수(CO₂) 기능
 - ※ 「대한민국 2050탄소중립 전략」 LEDS 5대방향: “탄소흡수수단 강화” 명시
- (기후변화 적응) 홍수, 가뭄, 냉해, 병해충 등 식량확보(Food Security) 위기에 대한 대응 필요

□ 친환경농업의 공익기능 요구 증가

- (양적 성장) 2020년까지 농업면적 8% 성장계획에 미달(4.2%)
 - ※ 2025년까지 10% 계획(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계획)
- (친환경농업 정의) 화학물질에 대한 식품안전 중심 → 농업생태계의 건강 중심으로 변경
 - ※ 유기농업이란 생물다양성, 생물학적 순환, 토양의 생물학적 활성화 등 농업생태계의 건강을 증진·강화하는 총체적 관리체계이다.(CXG32/1999)

□ 농업의 공익기능 확대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 필요

- (국제기준) 유기농업 국제적 기준의 국내 적용 미비

- **(환경보전 확산)** 기존 친환경농업 외 환경친화적인 농법의 확산을 위한 제도적 근거 필요

환경보전 활동 지원에 대한 친환경농어업법의 한계

- 현행 친환경농어업법은 인증제도 위주로 구성, 농업생산을 통한 다양한 환경보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약함.
- 현행 공익형 직불제 관련 법에서도 인증 농산물에 대한 선택형 직불금 지급에 국한된 규정을 갖고 있으며 이를 다양한 농업활동에 대한 직불금 지원으로 확대하기 어려움.
- 농업생산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환경보전 활동 또는 농촌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환경보전을 위한 공동체 활동을 모두 선택형 직불금에서 담당하는 것은 예산제약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론적인 측면에서도 부적절하며 현실적으로 ‘직불금’ 명칭을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한 측면이 있음.
- 유기농업 외에도 환경, 생태계, 경관보전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다양한 농법이 존재하고 또 농촌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비농업적(농산물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환경보전 활동도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포괄적으로 지원하여 확산시키는 법적 근거가 필요함.

□ 해외 농식품체계의 문제 대응: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식량확보

- **(IPCC 대응방안)** 토양 유기물 향상, 작물잔사 관리, 식품손실 관리, 식생활 변화, 식품 폐기 감축 등 39가지 방안 제시
※ 「Special Report on Climate Change and Land」 IPCC. 2019
- **(4%이니셔티브, LPAA¹⁾)** 매년 토양탄소 0.4% 증가→기후변화 완화
- **(UNFSS 2021)²⁾** UN SDG를 달성하고 지구환경 보전을 위하여 농식품을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함을 강조

1) The Lima-Paris Action Agenda (2015)

2) United Nations Food System Submit 2021. 2021년 9월 뉴욕에서 개최되었음

□ 2030년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 전략

- (마일스톤) 2050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간단계 목표로서 2030년 까지의 전략
 - ※ EU그린딜은 2050 탄소중립의 마일스톤으로 2030 유기농업액션플랜 수립
- (과감한 목표) 탄소중립, 생물다양성, 식량확보 등 농업분야의 문제 해결에 대한 역할을 실효성 있게 추진: 2030 환경친화적 농업 30% 달성

□ 농식품분야 전체의 환경친화적 정책

- (농업의 대안) 현행 규정된 친환경농업의 범위를 넘어 농업분야 전체의 환경친화적 기조 강화
- (전과정접근법) 농민의 활동 외 자재생산, 운송, 소매, 식품폐기 등 전 과정에 대한 전략
 - ※ 농업분야 배출 비율(국내 2.9%)에 비해 농식품 전과정의 비율(IPCC, 21~37%)은 전 산업계에서 큰 비중

□ 기존 친환경농업의 혁신

- (농업환경보전) ‘화학자재 배제’를 목적으로 하던 친환경농업 ⇒ ‘농업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혁신. 고투입 친환경농업 재검토
- (과정중심 인증) 실험실 분석 결과 생산자가 책임 ⇒ 불가항력적이고 안전기준치에 적합한 검출은 생산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 정비

II. 친환경농업의 현황 및 발전 방향

1 현황

□ 친환경농업 성과와 한계

- (성과) 우리나라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제시.
식품안전에서 시작 → 환경보전 의식 확대
- (한계) 외래 자원에 대한 의존성은 불변: 화학자재 대신 허용자재.
시험분석에 과도한 의존: 결과주의 관리체계

□ 양적 성장의 정체

- (생산 측면) 최근 수년간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증가율 정체
- (소비 측면) 생협, 대형마트, 전문매장 등 친환경 농식품 전반적 매출 정체

□ 질적 성장의 정체

- (생산 측면) 생물다양성, 토양활성화 등 환경보전 기능의 발전 미흡:
공시자재에 과도한 의존, 잔류농약 검출여부에 과도한 관심
- (소비 측면) ‘안전한 식품’으로서 친환경농산물 소비, 책임소비 의식의 미약
- (제도 측면) 인증제도 중심으로 법령 운영 → 친환경농업의 육성 정책 상대적 미흡

- (생산부문) 생물다양성 증대를 통하여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환경친화적 농업 육성
 - (환경친화적 혁신) 농업의 공통과제인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대응, 적정 생산성을 친환경농업이 선도
 - (농민 참여) 광범위한 농민들의 실천에 의한 혁신
- (소비부문) 친환경농업 생산 30%를 견인하는 책임소비
 - (비전) 생명가치가 미래세대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연대
 - (목표)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친환경농업 생산 30%를 견인하는 책임소비
 - (원칙) (가치) 미래세대로 이어지는 실천적 친환경농업의 의미와 가치 공유
(방법)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이고 공정하게 건강한 먹을거리 제공
(실천)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 과정에서 함께하는 협력 체계
- (법령·제도부문) 환경친화적 농업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정비
 - (특화·확대) 친환경농어업법을 (가칭)유기농업지원법과 (가칭)농업환경보전지원법으로 분리 검토: 유기농업 특화, 환경보전활동 확대
 - (과정중심) 환경친화적 농업 인증제도를 과정중심으로 개선

Ⅲ. 중장기적 발전 방안

1 생산부문

1) 기후변화 대응으로서 농업생태계 조성

□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전환

- (목적의식 전환) 토양비옥화 및 생태순환 중심의 생산기반 조성:
친환경농업이 선도, 관행농업도 동참
※ 지금까지 친환경농업은 화학물질 배제한 식품 생산 목적
- (정책목표 전환) 인증실적 중심의 정책목표 → 생물다양성, 생태 순환, 토양 개선 등 환경보전 중심의 정책 목표

□ 생물다양성 증진

- (생산양식 변화) 인증을 위한 형식적 실천이 아닌 생태계 보전을 위한 실질적 실천 방안 전파
 - 연작·단작(Monoculture) → 윤작·혼작(Polyculture)
 - 농민의 자가채종 권장 및 확대 (토종종자 보전)
 - 생태완충지: 농업활동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완화 및 생물 서식처 제공(둠벚, 농장 둘레의 보전 등)
- (생물학적 순환) 질소·탄소의 순환체계 구축
 - 외래자원 의존성 완화: 유박·식물추출물 등 수입 자재 절제
 - 경축순환, 임축공영, 임농공영 등 다양한 순환체계 설계·확산

□ 토양의 탄소저장 강화

- (토양유기탄소 증대) 4% 이니셔티브 참여 농지토양의 유기물 증대
※ 4% Initiative: 연 0.4% 토양유기물 증대로 인간활동의 탄소배출량 상쇄
- (토양양분관리) 농경지의 양분수지(투입량-산출량)를 고려한 양분의 적정투입 및 유출감소
- (무경운 권장) 무경운 농법의 기술개발 및 보급

☐ 환경친화적 축산업 활성화

- (유기축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유기축산의 확산
- (동물복지) 공장형 축산업에서 동물복지형 축산업으로 전환 유도

2) 환경친화적 농업의 과감한 확산

☐ 전국 수도작 ()%를 환경친화적 생산양식 도입

- (유기·무농약 인접지) 친환경농업 인증 필지 인접지의 환경친화적 생산양식 도입 권장
- (완숙퇴비 권장) 수도작에 유박 등 미숙퇴비대신 완숙퇴비 사용으로 메탄 발생 저감
※ 논에 완숙퇴비 사용 시 메탄 발생 저감 (일본 농업환경기술연구소, 2004)

☐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확산

- (환경서비스 지불제) 선택형직불제와 연계 →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실천 사항 재정비

☐ 친환경농업 진입장벽 완화

- (교육·훈련 확대) 관행농가 대상 인식개선 및 수용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 (문서·기록 효율화)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요구되는 문서·기록에 대한 농민 부담 완화: 필수문서 외 간소화

1) 소비자 인식전환 및 건강한 소비문화 조성

- 친환경농업의 가치 확산을 통해 책임소비 확대 노력 필요
 - (가치)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농업·농촌의 역할로는 안정적 식량 공급이 높게 나타났으나 도시민은 환경보전보다는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 공익적 기능 가치 발굴 노력 필요
 - (맞춤형 대책)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일반 소비자 의식조사 결과, 변화하는 상황에 맞도록 소비자층, 품목, 판매처 특성 등 맞춤형 접근 및 대책 마련 필요

2) 공공조달 확대

-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계약재배 구조 확립
 - (공공급식) 친환경농산물의 확대를 위해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을 중심으로 조직화된 소비처 발굴 및 확대
 - (먹거리 공공성) 임산부 및 취약계층 대상 친환경 먹거리 제공 등 먹거리의 공공적 역할 확대 및 친환경농산물 우선구매제도 확립

3) 민간소비 확대

- 생산자 소비자를 연계하는 친환경 플랫폼 및 인센티브 마련
 - (플랫폼) 생산자와 소비자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친환경 플랫폼 구축

- (인센티브) 녹색소비 개념에 ‘친환경 먹거리’를 포함하여 환경부의 그린카드 에코머니 포인트 제공 및 녹색제품 사용표시제 부문에 친환경급식 사용 어린이집, 친환경농산물 판매하는 등 포함하는 등 인센티브 강화

4) 생산-유통 구조 정립

□ 안정적인 소비시장 확대를 위한 지역 및 전국 단위 실천 노력

- (지역 단위) 기본적으로는 지역 생산-지역 소비 체계를 통해 지역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고, 물류 등 측면에서도 탄소배출을 최소화함으로써 지역농업 발전 및 지역환경보전 기틀을 마련
- (전국 단위) 소비를 보다 더 확대하고 공급과 수요의 완충기능 강화를 위해 전국 단위의 생산조직화, 광역 단위 거점별 친환경유통센터 및 친환경도매시장 등 유통인프라 확대, 통합생산유통관리조직 구축 등 공동공급체계 마련을 통한 생산-유통 구조 정립 필요

5) 생협 활성화

□ 생협 조합원 500만 달성으로 책임소비자 확보

- (역할) 생협은 친환경농업의 질적 성장은 물론 친환경농식품 판매 매출액의 절반에 달하는 양적 성장에도 크게 기여해옴
- (지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농식품부 또는 기재부로의 업무이관을 비롯하여 공영도매시장 설치, 물류 기반시설 용자, 공유지 임대, 매장의 공공시설 내 입주, 판매장 설치 및 배송차량, 직거

래, 선도금, 자조금, 자원순환지원센터 설립 등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소비실천을 높여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확산시켜나가도록 함

6) 가공 활성화

□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가공활성화 추진

- (인식 확산) 친환경가공의 국내산 친환경농산물원료 점유율 확대 및 국내식품원료 국산화 비율상향 촉진. 친환경농수축산물 및 천연물질로 원료확대. 친환경가공산업 활성화를 친환경소비문화로 정착
- (지역식품산업의 가치 창출) 지역토착형 친환경가공용 농업 육성과 지역민 중심 가공 기술-노동 인력 지원체계 구축. 도시와 농촌간 지역순환경제 촉진, 수도권 대도시권역은 지역농업의 가치와 전통식문화를 총괄한 친환경식품시장 형성, 친환경식품제도혁신 수립
- (연계) 농산과 가공, 농업과 비농업을 분리하는 관행 타파, 농업 및 환경보전과 연계하는 친환경식품제도경장을 적극적으로 추진

1) 친환경농어업법의 전면 개정

□ 농업·농촌의 환경보전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

- (공익기능 강화) 농업생산과정에서 환경·생태계·경관 보전활동을 확산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 마련
- (친환경 범주) 현행 유기·무농약 등 제한된 ‘친환경인증’에서 확대
→ 저탄소·무항생제·동물복지 등 기존 환경친화적 생산양식 포괄
→ 무경운·탄소저장·자가채종 등의 세부 활동까지 포괄

□ 유기적 생산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유기농업 분리·특화) 친환경농산물에서 분리 → 국제공통의 원칙·규정에 따른 유기농업으로 발전
※ 「CXG32/1999 유기적으로 생산한 식품의 생산·가공·표시·마케팅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유기농업의 정의, 원칙, 기준, 관리시스템 등 재정비
- (유기농업 확대) 유기생산자 확산·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 마련
- (인식 개선) 허용 투입재의 사용뿐만 아니라 농업생태계의 총체적 관리와 연관되어 있음을 규정
⇒ 농장 관리, 생산자 인식과 철학, 생산자단체의 공동 활동 등
※ 현재, EU와 일본에서 이와 같이 유기농업 지원법률과 분리된 환경친화적 농업 및 비농업적 활동을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것이 현재 농업환경정책을 확대하는 근거법 역할을 하고 있음.

□ 인증 전문화를 위한 법령의 구조적 변경

- (인증제 분리·이관) 인증 관련 규정은 친환경농어업법에서 분리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포괄
- (품질관리 전문화) 유기, 무농약, 무항생제, GAP 등 다양한 농수산물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가공품) 농수산물의 가공품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특례법을 제정하는 방안

□ 추가 검토

- (소비확대 제도)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방안을 법안에 포함시키는 방안
- (표현의 제한) 인증 시에만 ‘유기’, ‘친환경’ 용어를 사용을 허용하는 규정의 타당성
 - ※ 로고·마크 사용을 위해 인증을 받는 규정은 타당. 하지만 언어의 규제는 검토 필요

2)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선진화

□ 생산물 인증에서 생산과정에 인증으로 개편

- (인증기준 재검토) 환경친화적 활동이나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활

동을 중심으로 평가 지표를 적용

- 탄소중립에 기여하거나 생물다양성 증대에 기여하는 활동에 대한 인증기준을 추가로 적용
- 저탄소인증 외 다양한 환경친화적 농법에 대한 인증의 신설검토

○ (시험분석 의존성) 시험분석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 조정

※ 현재 생산물·토양 등에 대한 시험분석에 비용-효과의 비효율성 초래 우려

○ (문서 과잉) 농업인에 과도한 문서·기록의 완화

※ 필수기록 외 간소화→ 생산현장의 위험평가(Risk Assessment) 비중 강화

□ 인정기관의 전문성 제고

○ (전문인력) 인정기관 담당자의 잦은 교체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 전문인력의 고정 배치

○ (중재기구) 불합리한 인증처리에 따른 고충상담(신고)센터 설치

※ 국제기준 ISO17065(인증기관) 및 ISO17011(인정기관)에서 불합리한 인증처리에 대한 컴플레인 보장 (인증기관도 인정기관에 컴플레인 가능해야 함)

1) 「지속성이 큰 농업생산방식의 도입 촉진에 관한 법률」**가) 제정 배경**

- 농업은 식량의 공급 기능 이외에 국토·환경 보전과 같은 다원적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런 기능을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³⁾
 - 그런데 일본에서 농지의 생산력 증진 유지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흙만들기 작업이 매년 줄어들고 있고, 반면에 과도한 화학비료와 화학농약 사용으로 영농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며, 환경과 조화를 이룬 지속적인 농업생산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
 - 또한 농산물의 소비면에서는 유기농산물 등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빠르게 커지고 있음
- 이런 시급한 문제에 대응하고, 환경과 조화를 이룬 지속적인 농업생산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됨

나) 주요 내용☐ **구성**

- 총 10개 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목적(제1조)**

- 지속성이 큰 농업생산방식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 환경과 조화를 이룬 농업생산을 확보하고, 더욱 농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지속성이 큰 농업생산방식의 정의(제2조)**

- 지속성이 큰 농업생산방식이란 “토양의 성질에 유래하는 농지의 생산력 유지 증진, 그

3) 생산국장 통지, 「持続性の高い農業生産方式の導入の促進に関する法律の施行について」(최종개정 2016.4)

외 양호한 영농환경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농업의 생산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기술을 전부 사용하여 실시하는 것을 말함

- ① 퇴비와 그 외 유기질자재의 시용에 관한 기술로 토양성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농림수산서령으로 정한 것(퇴비 등 시용기술)
- ② 비료 시용에 관한 기술로 화학적으로 합성된 비료 시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큰 것으로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한 것(화학비료 저감기술)
- ③ 유해 동식물의 방제에 관한 기술로 화학적으로 합성된 농약의 사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큰 것으로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한 것(화학농약 저감기술)

2) 「유기농업 추진에 관한 법률」

가) 제정 배경

- 농림수산성은 1999년 「지속농업법」이 제정된 후 환경보전형농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는데 유기농업에 대한 대책추진은 적극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음⁴⁾
 - 반면에 농림수산성은 1992년에 발표한 「유기농산물 등의 특별표시 가이드라인」에서 「유기」, 「저농약(減農藥)」 및 「무농약」의 표시기준을 정하고, 행정지도에 의한 표시규제를 실시함
 - 그 후 JAS법(「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유기농산물의 기준·인증제도를 도입함
 - 이처럼 유기농업에 대해 표시규제가 강화되었는데, 유기농업을 보급, 확대하려는 정책이나 법제도는 없는 상황이 계속되어 농업인들이 유기농업을 확대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특히 이런 상황에서 외국산 유기농산물 수입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유기농업인들의 우려가 커짐
- 이에 유기농업의 건전한 발전과 보급을 이루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일본유기농업학회가 중심이 되어 2005년 8월 「유기농업추진법시안」을 작성하여 농림수산대신과 유기농업추진의원연맹에 제안함
 - 그 후 유기농업추진의원연맹이 시안을 참고로 법안을 만들어 의원입법 형태로 2006년 12월 국회에 상정되어 성립됨

4) 本城昇, 2017, 「有機農業推進法の成果と課題(Ⅰ): 法施行10年を振り返って」, p.7, 『有機農業研究』vol.9, No.2,

나) 주요 내용

□ 구성

- 총 15개 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목적(제1조)

- 유기농업 추진에 관해 기본이념을 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하게 하며, 유기농업 추진에 관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유기농업 추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고, 유기농업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목적임

□ 기본이념(제3조)

- 유기농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지켜야 할 기본이념을 다음과 같이 규정함
 - 첫째, 유기농업 추진은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 및 환경과 조화를 이룬 농업생산 확보가 중요하고, 유기농업이 농업의 자연환경기능(농업생산활동이 자연계의 생물을 개재하는 물질 순환에 의존하고, 또한 이것을 촉진하는 기능을 말함)을 크게 증진하며, 또한 농업생산에서 생기는 환경부하를 줄이는 것이므로 농업인이 쉽게 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이루어져야 함
 - 둘째, 유기농업 추진은 농업인과 그 밖의 관계자가 유기농업에 의해서 생산된 농산물의 생산, 유통 또는 판매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소비자가 유기농업에 의해 생산된 농산물을 용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이루어져야 함
 - 셋째, 유기농업 추진은 소비자의 유기농업 및 유기농산물에 대한 이해 증진이 중요하므로 유기농업인과 그 밖의 관계자, 소비자의 연대를 촉진하면서 이루어져야 함
 - 넷째, 유기농업 추진은 농업인과 그 밖의 관계자의 자주성을 존중하면서 이루어져야 함

3) 「농업이 가지는 다면적 기능의 발휘 촉진에 관한 법률」

가) 제정 배경

- 2013년 12월에 「농림수산업·지역의 활력창조본부」가 결정한 「농림수산업·지역

의 활력창조플랜」에서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다면적 기능의 유지·발휘를 위해 일본형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기로 함

- 일본정부는 일본형직접지불제도의 실시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농업이 가지는 다면적 기능의 발휘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2014년 6월 성립하여 2015년 4월부터 시행됨

나) 주요 내용

□ 구성

- 총 15개 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목적(제1조)

- 농업이 가지고 있는 다면적 기능의 발휘를 촉진하기 위해 기본이념, 기본지침, 다면적 기능발휘촉진사업의 인정제도 등을 규정하여 국민생활 및 국민경제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농업이 가지는 다면적 기능」의 정의 등(제3조)

- 「농업이 가지는 다면적 기능」이란 국토의 보전, 수자원의 함양, 자연환경의 보전, 양호한 경관 형성, 문화의 계승 등 농촌에서 농업생산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식량과 그 외 농산물 공급 기능 이외의 기능을 말함
- 「다면적 기능 발휘촉진사업」이란 농업이 가지는 다면적 기능의 발휘를 촉진하기 위해 농업인이 조직하는 단체 및 기타 농림수산서령으로 정하는 자가 실시하는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함
 - 농업용 용배수시설, 농업용 도로, 그 외 농지의 보전 또는 이용상 필요한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다면적 기능 직불의 근거조항)
 - 중산간지역 등에서 농업생산활동의 지속적인 실시를 추진하는 활동(중산간지역 등 직접지불의 근거조항)
 - 자연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농업의 생산방식으로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도입하는 농업생산활동의 실시를 추진하는 사업(환경보전형 농업 직접지불의 근거조항)

부록2

식품체계에서 기후변화 대응 방안 (IPCC, 2019)

참재력: VH(Very High), H(High), L(Limited), N(None)

부문	대응 방안	완화	적응
경종 관리	토양 유기물 향상	VH	H
	품종 개량	L	VH
	농업용수 관리 개선	L	VH
	파종 · 정식 시기 조절	N	VH
	정밀한 시비량 관리	H	H
	해충종합관리(IPM)	N	H
	제철 작물 생산	N	H
	바이오차 투입	H	VH
	임농혼작	H	VH
	작물다양화(윤작, 혼작 등)	L	VH
	경작-휴경 구획	H	VH
	경운 조절	H	H
	작물잔사 관리	VH	VH
	경축 체계	H	H
축산 관리	수립 방목	VH	VH
	품종 개량	L	L
	비육	L	H
	반추 중소가축으로 전환	L	H
	조사료 확보	H	H
	메탄 억제제	VH	N
	열 스트레스 조절	L	VH
	계절에 맞는 급여	H	VH
	가축 건강 관리	H	VH
기후 서비스	조기 경보 체계	N	VH
	계절별 기후 리스크 예측	N	VH
	작물 및 가축 보험	N	VH
공급 체계 개선	식품 저장 인프라	L	VH
	공급 거리 단축	L	L
	식품 운송 체계 개선	H	VH
	식품 가공, 소매 등 농식품 산업의 효율 개선	H	VH
	농업의 에너지 효율 개선	H	H
	식품 손실 감축	VH	H
	도시농업 및 근교농업	L	H
	바이오 경제 (폐기물의 에너지화 등)	N	L
수요 관리	식생활 변화	VH	H
	식품 폐기량 감축	VH	VH
	포장 줄이기	L	H
	판매 방식의 대안 (직거래 등)	L	L
	식품 유통망과 외부 비용의 투명성 확보	H	H

※ 자료: 「Special Report on Climate Change and Land」 IPCC, 2019

부록3

TF 향후 일정

일자	과 제	내 용
21.10.15.	법령제도소분과 회의(4차)	법령제도부문 안전(안) 논의 및 검토
21.10월	소비소분과 회의(4차)	소비부문 안전(안) 논의 및 검토
21.10월	생산소분과 회의(4차)	생산부문 안전(안) 논의 및 검토
21.10월	운영위(3차)	분과위 상정 안전(안) 통합 작성 논의
21.10월	TF 단장 언론 기고/인터뷰	친환경농업TF 그간 활동 및 계획
21.10월	전체회의(4차)	분과위 상정 안전(안) 전문가·현장 의견수렴
21.11월	소분과 회의(5차)	부문별 안전내용 조정 및 확정
21.11월	전체회의(5차) 공개토론회	본회의 안전(안) 마련, 발표, 의견수렴
21.11월	관계부처 의견수렴(사무국)	농특위 본위원 당연직 부처, 관계부처 등
21.11월	운영위(4차)/소분과회의(5차)	토론회, 의견수렴 후 안전(안) 보완 검토
21.11월	농어업분과위 안전 상정	협의·조정, 본회의 상정여부 의결
21.11월	농특위 운영위 안전 상정	협의·조정, 본회의 상정여부 의결
21.12월	농특위 본회의 안전 상정	협의·조정
21.12월	전체회의(6차), 연구용역 최종보고	성과보고 및 향후 대응방안